

의안번호	제 104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6월 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6월 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'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변경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 및 제6조)
 - “지방자치법 제15조제6항” → “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”
 -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” → 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”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 제26조제3항제1호”를 “영 제25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영 제26조제4항”을 “영 제2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15조제6항”을 “법 제21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26조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5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)</p> <p>①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 제2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<u>도지사</u>”라 한다) 소속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(이하 “<u>심의회</u>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<u>영 제26조제3항제1호</u>에서 “<u>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</u>”는 자치업무담당국장, 환경업무담당국장, 건설업무담당국장, 감사관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)</p> <p>①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 제25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영 제25조제3항제1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영 제26조 제4항</u>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,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영 제25조 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6조(심의회 부의) 도지사는 주
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
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
제15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
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
후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의회 부의) -----

----- 법
제21조제6항-----

-----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치행 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 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 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 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 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 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 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② ~ ⑤ 생략

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⑦ ~ ⑬ 생략

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 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5조(감사청구심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감사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감사청구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4. 생략

② 생략

③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

2. 생략

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~⑥ 생략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, 시·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